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1 회

제 1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730,557,013	21,916,710
일반회계		712,800,481	21,384,014
특별회계		17,756,532	532,696
	공기업특별회계	15,902,727	477,082
	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	15,902,727	477,082
	기타특별회계	1,853,805	55,614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059,705	31,791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794,100	23,823

- 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99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2,5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